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8590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8590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소1244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지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안진호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1.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소12445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50,789원과 그 중 28,112,025원에 대하여 202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하순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위 회사를 주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렌트기간 60개월, 월납부액 1,588,140원 등의 내용으로 장기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22. 7. 20.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은 반납 받았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와 미납된 교통범칙금 및 통행료 등 합계 28,112,025원과 지연배상금 138,7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28,250,789원과 그 중 28,112,025원에 대하여는 202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아닌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에게 자신의 신분증 등을 건넨 이상 민법 제125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지거나, 예비적으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것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최소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로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주면 추후 E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D에게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건네 준 사실,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서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 하여 렌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심지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원고 직원의 전화도 피고가 아닌 D이 피고인양 행세하면서 그 전화를 받아 확인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고, 달리 피고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대리 형식으로 체결된 바 없고, 원고도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표현대리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D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 등록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과실방조에 의한 피고와 D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들 또한 전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철, 판사 이효진, 판사 박미리